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2021년 12월 17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2.16(목)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1. 12. 16(목)	담당부서	통상법무기획과
담당과장	정경록 과장(044-203-4870)	담 당 자	김혜림 사무관(044-203-4879)

산업부, 업계 등 대상 『韓-EU 공동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인포세션』 개최

- EU 집행위와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EU CBAM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 및 업계 우려사항 전달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EU집행위원회와 공동**으로 **12.16(목) 오후 5시 우리 업계·정부·학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EU CBAM* 인포세션(info session)**』을 화상으로 개최하였음

*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asure) : 국별 환경규제 차이를 이용하여 탄소 多배출산업이 低규제 국가로 탄소 배출을 이전 못하도록 경제적 부담 부과

○ 금번 인포세션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0월 EU를 방문**, CBAM에 대한 우리 업계의 관심과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EU측에 인포세션 개최를 제안**하고, 이를 **EU측이 수용**한 데 따른 것임.

○ 참고로, **우리 정부**는 **EU CBAM 법안 관련** 관계부처 및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의견서*를 마련**하고 **11.17자로 EU집행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CBAM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 중에 있음.

* ▲우리 탄소감축정책 인정, ▲CBAM의 WTO 합치, ▲행정부담 감면, ▲투명성 제고 등 요구

□ **금번 CBAM 인포세션**에는 **EU집행위원회 조세총국·기후총국·통상총국의 CBAM 담당관 10여명**이 참석하여, **CBAM의 주요내용 및 운영방식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우리 참석자들과 **질의답변(Q&A)** 세션을 가졌음.

○ **우리 업계·정부·학계**에서도 **100여명이 참석**하여 CBAM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음.

< 韓-EU 공동 EU CBAM 인포세션 개요 >

ㅇ **일시·장소** : '21.12.16(목) 17:00~18:30 / 온라인 회의

ㅇ **참석자 :**

- **우리측 :** 산업부 윤창현 통상법무정책관(주재) 등 100여명
(관계부처) 외교부, 환경부, 기재부 등 (기관) 무역협회, 철강협회, 자동차협회, 대한상의, KOTRA 등
(업계) 포스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롯데케미칼, 현대제철, 현대트랜시스, 동국·세아제강 등
(학/연구계) 서울대, 고려대, 대외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 **EU 집행위측 :** 조세총국, 기후총국, 통상총국의 CBAM 담당관 10여명

ㅇ **주요내용** : ❶CBAM 주요내용 및 운영방식 설명(EU집행위원회 발표),
❷CBAM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❸우리측 관심·우려사항 전달

□ **윤창현 산업부 통상법무정책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EU집행위**가 **우리 정부**의 **CBAM 인포세션 개최 제안**을 **수용**하고, 우리측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을 해준데 대해 **감사**를 표명하고,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을 아래와 같이 **설명**함.

ㅇ EU가 탄소누출* 문제 대응을 위해 CBAM을 도입한 점은 이해하지만,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어서는 안 되며, **WTO 규범에 합치**되어야 하며, **對EU 수출기업의 행정 부담이 최소화**되어야 함.

* 탄소 多배출산업이 환경低규제 국가로 생산기지를 이전하여 온실가스 배출 규제 효과 감소

ㅇ 특히 **CBAM의 설계·운용 과정**에서 우리가 '15년부터 운영중인 탄소배출권제도(ETS) 등 **탄소 감축 정책이 반영**되어야 함.

□ **이날 참석한 기업**들은 EU측에 **CBAM 법안의 상세 내용***이 **불확실**하고 추가적인 **행정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데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앞으로 CBAM 법안을 EU내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를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함.

* ▲각국의 감축 활동 면제·감면 기준 ▲배출량 산정·검증 방법 ▲수입자 등록 절차 등
** EU 입법절차 : ① EU집행위 법률(안) 제안 → ② 유럽의회 및 각료이사회 심의 → ③ 기관간(의회, 각료이사회, 집행위) 협의 및 합의 → ④ 관보게시·발효 → ⑤ 위임·이행법안 채택

ㅇ 포스코 등 **우리 철강기업**들은 CBAM이 **수출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법안 입법 과정에서 **한국과 같은 주요 교역국**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제안함

○ **한국무역협회**에서는 CBAM의 상세 운영방식은 이행법안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투명한 제도 도입과 운영**을 위하여 앞으로도 한국 정부와 기업들과 **활발한 의사소통을 지속**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함

○ **한국철강협회**에서는 EU는 **CBAM 실행법**을 조속히 **공개**하고, 수출기업이 보고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필요시 **CBAM 도입 시기**를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함

□ 이에 **EU집행위원회**는 금번 인포세션이 CBAM에 대한 **한국 정부와 업계의 입장과 우려사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이를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함

□ **산업부**는 금번 인포세션에서 제기된 사항을 포함하여 **CBAM 입법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EU 집행위**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우리 업계**의 **CBAM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임.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 김혜림 사무관(☎ 044-203-48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EU CBAM 개요**

1. 도입 배경

□ EU 집행위는 '30년 기후목표('90년 대비 55% 감축)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법률의 제·개정안을 담은 Fit for 55% Package 발표('21.7.14)

○ 신성장전략·산업경쟁력 및 탄소중립을 목표로 CBAM 법률 제정안 포함

□ CBAM제정안은 EU 입법절차*를 거친 후 관보 게시 및 발효 예정

* EU 입법절차 : ① EU집행위 법률(안) 제안 → ② 유럽의회 심의 → ③ 각료이사회 심의 → ④ 기관간(의회, 각료이사회, 집행위) 협의 및 합의 → ⑤ 관보게시·발효

2. 주요 내용

□ **(도입목적)** EU ETS와 통합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탄소누출 방지

□ **(적용범위)** EU에 ①시멘트, 전기, 비료, 철·철강, 알루미늄을 수출하는 ②모든 국가*의 온실가스 ③직접 배출량에 적용

* 적용제외국가 : △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스위스 및 EU 외부영토(세우타, 멜리야 등), △EU ETS 적용 국가 또는 협약 체결국

□ **(주요내용)** ①관할당국의 ②허가를 받은 수입업자가 전년도 수입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③CBAM 인증서를 당국에 제출

< CBAM 법률 주요내용 >

		주요 내용
관할당국		수입업자 승인, CBAM 인증서 관리 등을 담당하는 관할당국(Competent Authority) 설치
수입허가		관할당국의 허가를 받은 수입업자만 EU로 물품 수입 가능
CBAM 인증서	가격	EU ETS 배출권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제출	수입품의 전년도 탄소 배출량과 이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 수를 당국에 제출(매년 5월말)
	감면	i)수입품 원산지에서 탄소 가격을 旣 납부하거나, ii)EU ETS 下 무상할당 해당 업종의 경우 CBAM 인증서 수량 감면 요청 가능

□ **(전환기간)** '23.1.1일부터 적용되며 전환기간(~25.12.31) 중 배출량 등 보고의무만 부여하고 재정조치는 없으며, 전환기간(3년) 이후 본격 시행